

##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공고

해당 권역의 지역·대학·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1월 1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※ 본 공고는 창업중심대학(주관기관)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, [예비]창업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는 '25년 3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.

1

###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의 목적 및 기능

○ (사업목적)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해당 권역의 지역 창업, 대학발 창업, 청년 창업 활성화

- 권역 내 창업거점 기능 : 권역 내외의 대학, 유관기관, 기업 등과 협업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전략 수립 및 실행

\* 해당 권역의 창업문화 조성, 확산, 활성화를 위한 교육, 행사 등을 추진

- 창업기업 성장지원 기능 : 유망한 (예비)창업기업\*을 발굴하고, 사업화 자금과 수요에 기반한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

\* 지역 주력산업 기반 창업기업, 대학발 창업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

## □ **창업중심대학 지원기간 및 예산**

○ (지원기간) 3년간 ('25~'27년) 운영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(2년) 예정

\*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 (협약 기간 13개월 내외)

\*\* 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 요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

○ (연도별 지원예산) 연 74억원 내외 (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)

\*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(55억원 내외)과 창업중심대학 사업비(19억원 내외, 자기부담 사업비 포함)로 구성

\*\* 연도별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대학별 정부지원사업비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##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### □ **신청 가능 지역(광역자치단체)**

○ (선정규모) 2개 창업중심대학 신규 선정

① 전남, 광주, 제주에 소재한 대학 중 1개 신규 선정

② 세종, 충북, 대구, 울산에 소재한 대학 중 1개 신규 선정

\* 지역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현재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는 제외되며, 평가를 통해 적합한 대학이 없는 경우 재공고 등 가능

< '24년 기준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>

권역	수도권	강원권	충청권	호남권	대경권	동남권
대학	한양대(서울) 성균관대(경기)	강원대(강원)	호서대(충남) 한남대(대전)	전북대(전북)	대구대(경북)	부산대(부산) 경상국립대(경남)

### □ **신청 자격**

○ 창업지원 전문인력 (조직), 협업 네트워크,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아래 신청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

< 창업중심대학 신청 자격 >

1.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 (학교의 종류) 1, 2호에 해당되는 대학

2. 『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』 제3조 1, 2, 3,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

※ 분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분교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,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

※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은 '대학' (본교 또는 분교) 명의로 가능

○ 신청대학은 권역 내외의 지자체, 타 대학(해외대학 포함), 기관, 연구소, 기업, 투자사 등 **협력기관\***을 구성하여 **사업 참여 가능\*\***

\* 협력기관 : 지역 창업생태계 및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기관, 기업

\*\* '창업중심대학-협력기관'의 구조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, 협약은 전담기관과 창업중심대학 간 진행하며, 총 사업비 관리·집행은 창업중심대학에서 일괄 수행 (협력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)

○ 동 사업에 신청하는 본교(캠퍼스 포함) 또는 분교에 해당 대학의 창업지원기능 결집, 창업지원조직 설치 유무가 우선 확인되어야 함

- 동 사업 선정 시 회계처리 등 전담조직 운영사항 전반이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함(협약체결 후 수행 주체(소재지) 변경 불가)

□ **신청 제외 대상**

- ① 『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』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③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'협약의 해약'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'실패'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
-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
- 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⑥ 교육부 『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대학』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### □ 권역 및 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 확보

※ 재원확보(창업기업 투자재원 및 자기부담사업비)는 3년 운영을 기준으로 조성하고, 향후 평가를 통해 연장(+2년)된 경우 동일한 규모로 추가재원(2년 운영) 확보 필요

- (투자재원 확보) 창업중심대 운영기간 동안 창업기업\*에 투자할 수 있는 대학별 자체 투자재원 총 9억원(연간 최소 3억원) 이상\*\* 조성

\* 전체 창업중심대학에서 지원한 창업기업(사업화 자금지원)을 대상으로 투자

\*\* 연도별 최소 3억원이 기준이며 신청대학의 학교법인, 산학협력단, 기술지주회사 등이 출자·투자한 펀드의 조성 및 집행 등 운용 전반을 대학이 담당하는 재원에 한함

\*\*\* 신청한 대학에서 제시한 투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평가시 반영

- 상기 신청요건과는 별개로 VC 등 외부의 투자재원을 활용할 경우 선정평가시 투자재원 조성 노력을 정성적으로 고려

\* 제시한 투자재원 미집행 시, 협약해지, 참여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

- (자기부담사업비 조성) 동 사업에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기 부담사업비 12억원 이상(연간 최소 4억원) 확보

\* 총사업비는 '정부지원사업비 + 창업중심대학 자기부담사업비'로 구성되며, 관련 규정(요령, 지침, 기준 등)과 중소벤처기업부,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집행

- 자기부담사업비는 반드시 현금 형태로만 투입이 가능하며 사업 계획서 작성 시, 활용용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\* 연도별 투입되는 자기부담사업비는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금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협약해지 등 제재조치

\*\* 연도별로 조성한 자기부담사업비는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점까지 100% 집행되어야 하며, 미집행시 제재 및 감점 등의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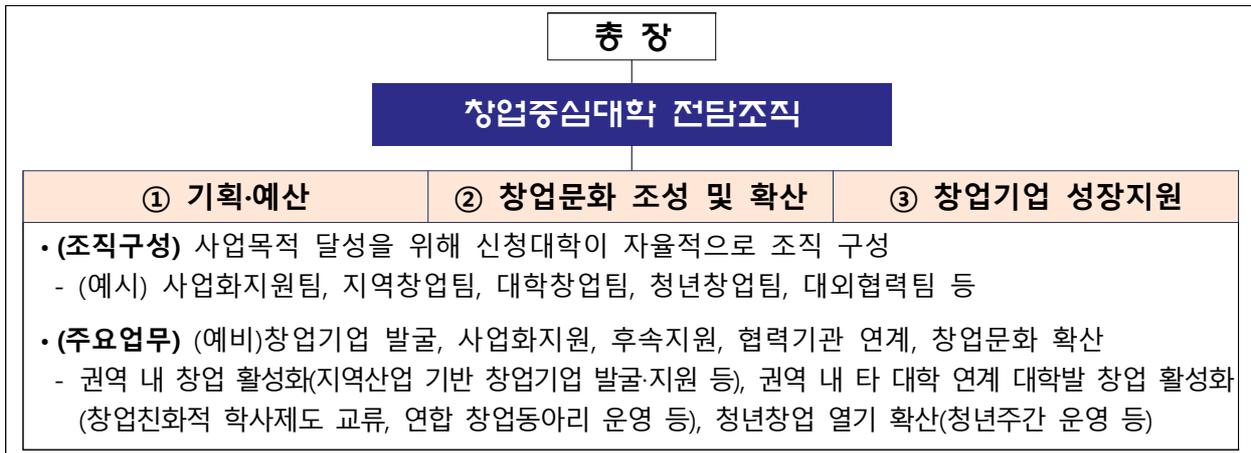
\*\*\* 신청한 대학에서 제시한 자기부담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평가시 반영

□ **창업중심대학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**

○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제32조에 의한 **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**

- \*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은 신청대학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하나, 타 사업단 및 조직으로부터 독립성과 창업지원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

**<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구성 (예시) >**



○ (예비)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역량을 보유한 **전담인력 구성**

- 전담조직의 장 (1인) 외, 창업중심대학 사업 **전담인력**으로 **최소 8인 이상**의 조직원 (전체 9인 이상)을 구성

- \* 전담인력은 타 지자체,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'창업중심대학 사업'만을 '100% 수행하는 인력'을 의미

- **전담조직의 장\***은 창업 (또는 창업관련분야)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·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

- \* 전담조직의 장은 대학 내 교무위원급 또는 학무위원급임이 확인되어야 함

- **전담인력**(전담조직의 장 외) 구성시 **최소 5인 이상**은 반드시 창업 **관련분야\*** **경력이 3년 이상인** 자로 구성

- \* 창업기업 관리·지원업무 수행,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, 대학 산학협력단,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창업유관기관 근무 이력(음식점 등 소상공인 창업경력 제외)

-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전용 사무공간 마련(100m<sup>2</sup>(약 30평) 이상)
  - 전담조직의 장과 전담인력은 동일한 사무공간에 근무해야 함
-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·운영을 위한 신청요건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
  - \*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구성 미이행시 지침에 따라 협약해지 등 제재 조치

## 4 창업중심대학의 역할

### □ 권역의 중장기 창업활성화 전략 수립 및 시행

-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진단하여 지역·대학발·청년창업 활성화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,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(계획) 수립 및 시행

#### < 창업중심대학의 미션 >

- **(지역창업)** 권역 및 지역 내 산·학·연 협업을 통한 지역주력산업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·육성과 함께 창업열기 조성 및 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
- **(대학발 창업)** 권역 내 전체 대학의 대학(원)생, 교원(교수, 연구원 등)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
- **(청년창업)**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부터 우수한 청년들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취·창업 기회 확장
- **(협력체계 구축)** 지역, 대학,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권역 내·외의 타 대학, 지자체, 유관기관, 민간기업, 연구소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

- (환경분석) 신청대학 권역의 산업환경, 인구분포, 창업기업 현황, 인프라 및 투자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목표·방향 설정
  - 지자체, 연구기관 등의 통계·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를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 목표로 제시

- (전략수립 및 시행) 지역·대학발·청년창업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, 활용방안 등을 중장기 계획(연도별 세부계획 포함)으로 수립
  - 창업중심대학 선정 후, 총괄기관(중소벤처기업부),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의 요청을 반영하여 매년(연도별) 사업계획서\*를 별도로 작성

\*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 창업기업 선발, 필수 프로그램 등을 반영

< '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내용 및 예산구성(안) >

구 분		내 용	예 산
창업기업 사업화 자금		•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	55억원 내외
창업중심대학 사업비	창업프로그램 운영비	•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	6억원 내외
	전담조직 운영비	•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여비, 회의비 등	9억원 내외
	자기부담사업비	• 프로그램 및 전담조직 운영비 등	4억원 이상

- (세부 프로그램 기획) 대학이 구축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지역·대학·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고도화 방안 마련
  - 지역창업 활성화 : 권역 내 지역주력산업\*을 설정하고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발굴, 연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
    - \* 권역 내 규제자유특구, 지역산업 연구기관,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발굴·육성 방안 등
  - 대학발 창업 활성화 : 권역 내 타 대학과 협업\*하여 대학(원)생, 교원, 기술이전, 실험실 등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
    - \* 타 부처 지원사업(글로벌, RISE 등)과 연계하여 대학발 창업 확산 방안 등
  - 청년창업 활성화 : 권역 내 청년의 기업가정신 함양\*은 물론,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\*\*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

\* 청년의날(법정기념일, 9월 셋째주 토) 행사를 권역 또는 지역의 대표 창업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도화

\*\* 스타트업과 청년 매칭을 통한 인턴십 제공, 외국인 유학생 창업지원 방안 등

## □ **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기업 대상 성장 지원**

- 중장기 목표 및 계획을 바탕으로 (예비)창업기업 발굴, 사업화 자금지원,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중장기 로드맵 제시
- (창업기업 발굴·지원)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(예비)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성장 로드맵 제시
  - 유망한 (예비)창업기업을 발굴\*하기 위한 홍보전략 및 협력기관 협업방안을 수립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유망 창업기업 발굴\*\*
  - \*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창업기업(지역창업, 대학창업, 청년창업)을 전략적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선정평가는 전담기관 가이드에 따라 진행 예정
  - \*\* '25년 기준, 73개사 내외 (예비)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예정이며, 신청·접수 경쟁률 및 T/O에 따라 창업중심대학별 창업기업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  - 선발된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, 창업기업 지속성장 로드맵을 통해 후속지원\*까지 연계
  - \* (예시) 수도권 창업기업 지방 이전 방안, 창업기업 프로그램 연속지원 방안 등

## □ **중장기 목표 및 계획 달성 평가**

- 최종 선정대학은 대학이 제시한 중장기 목표(연도별 목표 등)에 대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평가·중기평가·최종평가
  - 동 사업을 통해 대학 중심의 창업 거버넌스를 확산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권역·지역에 미친 긍정적 영향\*을 중점 평가
  - \* 신청대학은 권역 내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한 정량적 목표 설정 필요

## 5

## 신청기간 및 방법

### □ 신청기간

- (공고기간) 2025년 1월 13일 (월) ~ 2월 7일 (금), 16:00까지
- (예비 신청\*) 2025년 1월 13일 (월) ~ 1월 20일 (월), 16:00까지
  - \* 예비 신청을 완료한 대학에 한하여 본 신청 가능
- (본 신청) 2025년 1월 21일 (화) ~ 2월 7일 (금), 16:00까지

### 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(신청방법) 예비 신청, 본 신청(예비 신청 완료 대학에 한함)
  - (예비 신청) 예비 신청서 양식, 공문 제출
    - \* 예비 신청서 양식 및 신청 및 제출방식은 별첨자료 참고
  - (본 신청\*) K-startup 누리집([www.k-startup.go.kr](http://www.k-startup.go.kr)) →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    - \* 제출서류 : 제출공문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참여 전담인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 등
    - \*\* 본 신청은 예비 신청을 완료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

①회원가입(신청대학의 대표자 명의) → ②K-startup 접속→ ③사업신청관리 클릭 → ④사업 신청 클릭 → ⑤'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' 클릭 → ⑥신청서 작성 필수값 동의(개인정보 등) → ⑦기본정보(일반현황 인력정보 등) 입력 → ⑧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제한 300MB 유의) → ⑨제출 → ⑩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 확인(접수상태 '제출완료')

\* 회원가입은 신청대학의 대표자(총장) 명의로 진행

## 6

## 평가 및 선정 절차

### □ 평가 방법 및 절차

- 2단계 평가 (① 서류평가 → ② 발표평가)로 운영하며, 서류평가 점수 40%, 발표평가 점수 60%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  - 서류평가 :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 (2개)를 고려하여 3배수(6개 내외)\* 발표평가 추천
    - \* 동 공고 2페이지 신규 선정 지역 ①, ②별 3개 대학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  - 발표평가 : 중장기 목표 및 계획 설정에 대한 타당성, 연도별 수행 계획 등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전반적 종합평가
    - \* 평가시간 : 30분 이내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 이내)
    - \*\* 발표자는 '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의 장'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발표평가 세부 일정 및 발표자료 제출은 해당 대학 별도 안내
  - 단계별 (서류 및 발표) 총점 60점 이하 득점한 대학은 탈락 처리

#### < 창업중심대학 선정 평가일정(안) >

<b>사업 신청·접수</b>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~'25. 2월 7일	<b>서류평가</b> 사업계획서 평가 ~'25. 2월 2주차	<b>발표평가</b>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'25. 2월 3주차	<b>최종 선정</b> K-Startup 누리집 공고 '25. 2월 4주차
---	---	---	--

- \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대학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- \*\*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### □ 최종 선정

-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대학을 결정하고,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
  - \* 선정평가 결과 신청대학의 창업지원 역량이 본 사업 운영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, 선정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

□ **평가지표(안)**

< **창업중심대학 선정평가 기준(안)** >

평가 항목		평가 지표	배점
기본요건 충족 여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신청자격 충족 여부(신청대학 기준 및 신청 제외대상 검토)</li> <li>▶ 신청요건 충족 여부(전담조직 구성, 채용 등)</li> </ul>	(적/부)
서류 평가	사업 의지 및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학의 사업 추진 의지(전담조직 역량, 운영체계 등)</li> <li>▶ 창업친화적 학사제도, 교원 창업규정 등 대학정보공시</li> </ul>	40
	중장기 목표 및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권역 및 지역 환경분석 기반 중장기 목표 설정 타당성 등</li> <li>▶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구체성 등</li> <li>▶ 권역 내 협력기관 체계의 적합성 및 기대효과 등</li> </ul>	50
	권역·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(투자금)</b> 신청 대학 중 자체 투자재원을 최대 조성한 대학을 기준으로 최대 5점 ~ 최소 1점 부여</li> <li>* 3년 기준, 자체 투자재원 최소 9억원은 필수조건</li> </ul>	5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(자기부담사업비)</b> 신청 대학 중 자기부담사업비를 최대 조성한 대학을 기준으로 최대 5점 ~ 최소 1점 부여</li> <li>* 3년 기준, 최소 12억원은 필수조건</li> </ul>	5
<b>합 계</b>			<b>100</b>
평가 항목		평가 지표	배점
발표 평가	중장기 목표 및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창업중심대학 중장기 목표 및 달성 전략방안 실행역량</li> <li>▶ 연도별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구체성</li> </ul>	30
	지역창업 거점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, 고도화 방안</li> <li>▶ 창업중심대학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계획</li> </ul>	20
	대학창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본교 외 권역 내외 타 대학 연계·협업 구체성</li> <li>▶ 글로컬, RISE 등 대학지원사업 연계성</li> </ul>	20
	청년창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권역 내 청년 기업가정신 함양 계획 적절성</li> <li>▶ 권역 내 청년창업 열기 및 문화확산 파급성</li> </ul>	20
	창업기업 지원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창업기업 발굴, 홍보 전략의 구체성, 우수성</li> <li>▶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로드맵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</li> </ul>	10
<b>합 계</b>			<b>100</b>

\* 상기 선정평가 기준(안)은 실제 평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대학에 있음
- 신청·선정 대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,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사업 신청은 신청대학의 대표자(총장)\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 - \* 신청대학의 장 (협력 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)
-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,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
  - \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-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,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예정
- 자기부담사업비의 확보(입금확인)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, 전담조직 설치 등 그 외 신청요건은 3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  - \*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 - \*\* 기한 내 신청요건 미충족 시,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
-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, 중심대학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 중도 해지할 수 있음

- 창업중심대학은 타 대학,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, 협약은 전담기관 (창업진흥원)과 중심대학 간 진행
  - \* 모든 사업비는 신청대학에서 일괄 관리·집행 (협력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)
  - \*\* 협력기관과 참여기관은 단독으로 창업중심대학 기능을 수행하거나 "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주관기관"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- 선정된 대학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,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(PMS)을 통한 사업비 지출 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 - \*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선정 이후 협약 기간 내에 자기부담사업비 및 투자금 미집행 시, 사업비 환수 및 연차평가 시 제재(협약해지 등) 조치 가능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비 환수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
- 유사 취지의 정부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예산 등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중복지원 최소화를 위해 참여의 제한, 예산 감액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학이 없을시, 선발하지 않거나 선정 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·초기·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과 창업중심대학 동시 수행은 불가함
  - \* 본교(캠퍼스 포함), 분교, 산학협력단, 기술지주 등은 대학(본교)의 실질적 소속으로 보며, 예비·초기·도약패키지 지원사업과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

## 8

## 기타 참고사항

### 문의처

- (신청·접수 시스템 문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- (정책 문의)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-204-7953~4
- (사업 문의) 창업진흥원 청년도전팀 044-410-1811~2, 1816, 1819

※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(Quick Menu - 상담하기)

### 사업설명회

- 예비 신청을 완료한 대학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

\* 일정 및 장소는 예비 신청 완료 대학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